

목포시 고시 제 2011 - 105 호

목포시 산정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및 농공단지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동법 제33조 제3항 및 동지침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 11. .

목 포 시 장

관리기본계획 변경내역

목포시 산정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 규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목포산정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안)

현 행	변 경	비고(변경사유)
☐ 계획수립 근거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 농공단지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 제5장 제18조 ☐ 기본계획 I. 농공단지 개요 1. 관리기관 : 목포시장 2. 농공단지의 조성목적 가. 지역간 균형개발로 유휴인력의 취업기회를 확대 나. 농외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3. 농공단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목포시 연산동 1091번지 일대 나. 면 적 : 529,715㎡ (160,238평) 4. 농공단지조성 추진경위 가. '86년 7월 1일 농공지구 후보지 추천 나. '87년 4월 1일 농공지구 예정지구 지정 다. '87년 9월 24일 농공지구 예정지 공고 라. '87년 11월 2일 농공지구 기본계획 승인 마. '87년 12월 31일 농공지구 착공 (1차 - 100천평) 바. '88년 12월 30일 농공지구지정 변경계획 승인 (증 60천평) 사. '91년 1월 31일 농공지구단지 조성 준공	☐ 계획수립 근거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 농공단지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 제5장 제18조 ☐ 기본계획 I. 농공단지 개요 1. 관리기관 : 목포시장 2. 농공단지의 조성목적 가. 지역간 균형개발로 유휴인력의 취업기회를 확대 나. 농외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3. 농공단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목포시 연산동 1091번지 일대 나. 면 적 : 529,715㎡ 4. 농공단지조성 추진경위 가. '86년 7월 1일 농공지구 후보지 추천 나. '87년 4월 1일 농공지구 예정지구 지정 다. '87년 9월 24일 농공지구 예정지 공고 라. '87년 11월 2일 농공지구 기본계획 승인 마. '87년 12월 31일 농공지구 착공 (1차 - 331천㎡) 바. '88년 12월 30일 농공지구지정 변경계획 승인 (증 198천㎡) 사. '91년 1월 31일 농공지구단지 조성 준공	☐ 변경없음 ☐ 일부변경 I. 일부변경 1. 변경없음 2. 변경없음 3. 일부변경 4. 일부변경

현행			변경			비고(변경사유)
8. 입지여건			8. 입지여건			8. 일부변경 - 교통 및 항만 변경
시설명	교통시설(2006.3월말 현재)	확충계획	시설명	교통시설(2011.9월말 현재)	확충계획	
교통 (도로)	○ 서해안고속도로 종점 → 단지까지 (1km) ○ 목포시계부터 → 단지까지 (4km) ● 3개노선 버스 수시 운행 ● 단지입구가 시내 외곽도로와 인접 교통원활	● 목포-광양간 국도확장 ● 목포-광양간 고속 도로개통	교통 (도로)	○ 서해안고속도로 종점 → 단지까지 (1km) ○ 목포시계부터 → 단지까지 (4km) ● 3개노선 버스 수시 운행 ● 단지입구가 시내 외곽도로와 인접 교통원활	목포 - 광양간 고속 도로개통(2012)	
철도	○ 목포역부터 → 단지까지(5km)		철도	○ 목포역부터 → 단지까지(5km)		
항만	○ 목포항부터 → 단지까지(6km) ● 외곽도로 이용 물량운송 용이	목포 신외항 개항	항만	○ 목포항부터 → 단지까지(6km) ○ 목포신외항 → 단지까지(6.7km) ● 외곽도로 이용 물량운송 용이	목포대교건설완공 (2012)	
항공	○ 목포공항부터 → 단지까지(22km) ● 일 1개사 4회 운행	무안국제공항 개항	항공	○ 목포공항부터 → 단지까지(22km) ○ 무안국제공항부터 → 단지까지(40km)		
용수	○ 몽탄정수장부터 → 단지까지 (26km) ● 주암호 용수공급으로 용이 ● 농업용수 일일 공급능력 : 46천m ³ /일	탐진댐 용수공급	용수	○ 몽탄정수장부터 → 단지까지(26km) ● 탐진댐 · 주암호 용수공급으로 용수 용이 ● 용수 일일 공급능력 : 120천m ³ /일		
전력 통신	○ 전력 · 통신의 보편화로 활용 용이		전력통신	○ 전력 · 통신의 보편화로 활용 용이		
환경	○ 단지옆 북향하수종말처리시설 활용 으로 환경선도 ● 일 35,000m ³ 처리용량의 전후처리시설		환경	○ 단지 옆 북향하수종말처리시설 활용 으로 환경선도 ● 일 35,000m ³ 처리용량의 전후처리시설		

현행	변경	비고(변경사유)
II. 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 1. 관리 기본방향 가. 입주업체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나. 기술우위의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으로 경쟁력 확보 다. 제조업과 연계되는 다양한 산업의 집적화·협업화를 통한 생산성향상 도모 라. 연차별 기능인력 수급계획에 의한 고용창출 및 근로자 후생복지 증진 마. 공해업종의 입주제한 및 사후관리 지도를 통한 환경오염 배제 바. 공장용지의 부동산 투기억제 및 유흥지 발생의 최소화 2. 입주대상, 입주자격 및 사후 관리계획 가. 입주대상 업종 ○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제조,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폐수처리업, 폐기물수집처리업(중간처리업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 보관 및 창고업, 물류시설 설치·운영업,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전기업으로 하되 입주신청 업체에 대하여 전 제조공정의 공해발성 가능성을 농공단지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거 평가하여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업체는 입주를 제한하고 시장이 지역의 환경여건이나 당해 농공단지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입주 금지대상 이외의 사업장이라도 입주제한	II. 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 1. 관리 기본방향 가. 입주업체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나. 기술우위의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으로 경쟁력 확보 다. 제조업과 연계되는 다양한 산업의 집적화·협업화를 통한 생산성향상 도모 라. 연차별 기능인력 수급계획에 의한 고용창출 및 근로자 후생복지 증진 마. 공해업종의 입주제한 및 사후관리 지도를 통한 환경오염 배제 바. 공장용지의 부동산 투기억제 및 유흥지 발생의 최소화 2. 입주대상, 입주자격 및 사후 관리계획 가. 입주대상 업종 ○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제조,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폐수처리업, 폐기물수집처리업(중간처리업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 보관 및 창고업, 물류시설 설치·운영업,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전기업으로 하되 입주신청 업체에 대하여 전 제조공정의 공해발성 가능성을 농공단지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거 평가하여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업체는 입주를 제한하고 시장이 지역의 환경여건이나 당해 농공단지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입주 금지대상 이외의 사업장이라도 입주제한	II. 일부변경 1. 변경없음 2. 변경없음 가. 변경없음

현행						변경						비고(변경사유)
나. 입주자격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과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입주자격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과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업체						3. 일부변경 가. 연도별 계획변경
3. 생산·수출 및 고용증대 가. 생산 및 수출 (단위 : 백만원)						3. 생산·수출 및 고용증대 (계획) 가. 생산 및 수출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생산실적	판로		비고		연도별	생산실적	판로		비고		
		내수	수출					내수	수출			
2006	23,560	21,716	1,844		2011	259,694	192,910	72,984				
2007	25,604	23,661	1,943		2012	283,000	203,000	80,000				
2008	28,600	26,500	2,100		2013	300,000	218,000	82,000				
2009	30,100	27,100	3,000		2014	400,000	300,000	100,000				
2010	33,500	30,000	3,500		2015	500,000	380,000	120,000				
나. 고용(계획) (단위 : 명)						나. 고용 (단위 : 명)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고용인원	1,235	1,300	1,400	1,550	1,700	고용인원	1,089	1,140	1,190	1,240	1,300	

현행							변경							비고(변경사유)	
4. 원자재 수급 및 소득증대 전망 가. 원자재 수급 ○ 인근 국가공단, 대기업등(광양, 여천등)에서 원자재 수급 ○ 일부는 수입품 의존 물량확보 ○ 단지내 상호보완적 관계로 업체자재 수급 ○ 구매물품 원산지 방문 공동구매 활동 나. 임금소득 및 지역주민 소득전망 ○ 농공단지 본격 가동으로 지역주민 소득향상은 물론 경제인구 활동 영역이 매우 다양하고 광역화 될 것으로 전망 ○ 신기술의 고급인력 양산 및 최첨단 기자재 설치로 생산 근로자의 획기적 소득증대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 ○ 임금소득 (단위 : 명, 억원)							4. 원자재 수급 및 소득증대 전망 가. 원자재 수급 ○ 인근 국가공단, 대기업등(광양, 여천등)에서 원자재 수급 ○ 일부는 수입품 의존 물량확보 ○ 단지내 상호보완적 관계로 업체자재 수급 ○ 구매물품 원산지 방문 공동구매 활동 나. 임금소득 및 지역주민 소득전망 ○ 농공단지 본격 가동으로 지역주민 소득향상은 물론 경제인구 활동 영역이 매우 다양하고 광역화 될 것으로 전망 ○ 신기술의 고급인력 양산 및 최첨단 기자재 설치로 생산 근로자의 획기적 소득증대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 ○ 임금소득 (단위 : 명, 억원)							4. 변경없음 ○ 임금소득 일부변경	
년도별	고용인원			임금소득			비 고	년도별	고용인원			임금소득			비 고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2006	1,235	615	620	274	156	118	연평균임금 상승율 10%감안작성	2011	1,089	637	452	326	201	125	연평균임금 상승율 10%이내감안작성
2007	1,300	641	659	317	179	138		2012	1,140	670	470	342	212	130	
2008	1,400	750	650	340	190	150		2013	1,190	700	490	370	230	140	
2009	1,500	820	680	380	210	170		2014	1,240	730	510	400	240	160	
2010	1,600	850	750	450	250	200		2015	1,300	770	530	450	270	180	

현 행	변 경	비고(변경사유)
나. 단지의 용도구역별 건축할 건물의 범위 및 용도별 구역 평면도 1) 산업시설 구역 ·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보관 및 창고업, 물류시설 설치운영업, 산업기계장비임대업등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공장·부대시설 2) 지원시설 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같은 법률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업체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3) 공공시설 구역 ·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4) 녹지구역 · 녹지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5) 용도별 구획평면도 : “별표 1”	나. 단지의 용도구역별 건축할 건물의 범위 및 용도별 구역 평면도 1) 산업시설 구역 ·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보관 및 창고업, 물류시설 설치운영업, 산업기계장비임대업등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공장·부대시설 2) 지원시설 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같은 법률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업체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3) 공공시설 구역 ·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4) 녹지구역 · 녹지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5) 용도별 구획평면도 : “별표 1”	나. 변경없음 1)변경없음 2)변경없음 3)변경없음 4)변경없음 5)변경없음

현행							변경							비고(변경사유)
다. 업종별 공장배치 계획 및 배치기준과 업종별 배치도 1)업종별 공장배치 현황 (단위 : m ² (평))							다. 업종별 공장배치 계획 및 배치기준과 업종별 배치도 1)업종별 공장배치 현황 (단위 : m ²)							다. 일부변경 1)업종별 공장배치현황 변경
구분 업종	계		2006.3월말 현재		향후계획		구분 업종	계		2011.9월말 현재		향후계획		
	업체 수	면적	업체 수	면적	업체 수	면적		업체 수	면적	업체 수	면적	업체 수	면적	
계	68	445,303 (134,696)	66	432,881 (130,946)	2	12,422 (3,750)	계	77	445,303	77	445,303			
기계금속	15	104,264 (31,557)	15	104,264 (31,557)	-	-	기계금속	19	104,264	19	104,264			
음식료품	16	139,237 (42,155)	16	139,237 (42,155)			음식료품	16	139,237	16	139,237			
목재종이	2	8,862 (2,647)	2	8,862 (2,647)			목재종이	3	8,862	3	8,862			
석유화학	8	18,967 (5,709)	8	18,967 (5,709)			석유화학	7	16,005	7	16,005			
운송장비	10	112,272 (33,969)	8	99,850 (30,219)	2	12,422 (3,750)	운송장비	10	135,043	10	135,043			
기타	17	61,701 (18,659)	17	61,701 (18,659)			기타	22	41,892	22	41,892			

현행				변경				비고(변경사유)
2)배치기준 · 지식산업과 정보통신산업, 보관 및 창고업, 물류시설 설치 운영업등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 계열화가 가능토록 배치 · 공산품, 음·식료품 및 농·축산물 가공등 입주업종별로 집단화 하여 배치 · 입주기업체간에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계열화가 가능 하도록 배치 8. 지원시설의 배치 및 운용계획 가. 설치현황(2006. 3월말)				2)배치기준 · 지식산업과 정보통신산업, 보관 및 창고업, 물류시설 설치 운영업등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 계열화가 가능토록 배치 · 공산품, 음·식료품 및 농·축산물 가공등 입주업종별로 집단화 하여 배치 · 입주기업체간에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계열화가 가능 하도록 배치 8. 지원시설의 배치 및 운용계획 가. 설치현황(2011. 10월말)				2)변경없음 8.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규 모		비 고	구분 시설명	규 모		비 고	
	부지(m²)	시설규모(개소)			부지(m²)	시설규모(개소)		
공동이용 시설물	7,345	2	농공단지관리 사무소,유아원	공동이용 시설물	7,345	2	농공단지관리 사무소, 강당	
오폐수처리중 계펌프장	84	1	공공시설	오폐수처리 중계펌프장	84	1	공공시설	
소방파출소	1,203	1	공공시설	소방파출소	1,203	1	공공시설	
나.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용계획 ○ 산정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중계펌프장을 통하여 북항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공동처리하여 방류				나.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용계획 ○ 산정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중계펌프장을 통하여 북항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공동처리하여 방류				

현행	변경	비고(변경사유)
다. 공동이용건축물과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 공동이용건축물 및 지원시설의 설치는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의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관리비의 징수 및 사용계획 ○ 관리비의 징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7조의 규정 및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40조의 규정에 따르며 사용계획은 시장이 입주업체협의회와 협의하여 사용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9. 농공단지 관리 및 입주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가. 농공단지 관리 운영 ○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주업체협의회를 구성하고 분양 및 임대 업무를 제외한 농공단지관리 업무를 위탁하여 관리토록 함 나. 입주기업체의 지원 ○ 용수공급사업 및 환경오염방지사업 ○ 입주업체의 수출촉진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 농공단지의 안전관리등 방재계획 수립 및 시행 · 풍수해등 재해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 위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공해방지 등에 관한 사항 · 농공단지 방호에 관한 사항 ·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 공해방지시설의 설치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종업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 ○ 녹지조성등 농공단지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 기타사항은 농공단지 기업인협의회와 협의후 지원	다. 공동이용건축물과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 공동이용건축물 및 지원시설의 설치는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의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관리비의 징수 및 사용계획 ○ 관리비의 징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7조의 규정 및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40조의 규정에 따르며 사용계획은 시장이 입주업체협의회와 협의하여 사용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9. 농공단지 관리 및 입주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가. 농공단지 관리 운영 ○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주업체협의회를 구성하고 분양 및 임대 업무를 제외한 농공단지관리 업무를 위탁하여 관리토록 함 나. 입주기업체의 지원 ○ 용수공급사업 및 환경오염방지사업 ○ 입주업체의 수출촉진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 농공단지의 안전관리등 방재계획 수립 및 시행 · 풍수해등 재해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 위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공해방지 등에 관한 사항 · 농공단지 방호에 관한 사항 ·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 공해방지시설의 설치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종업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 ○ 녹지조성등 농공단지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 기타사항은 농공단지 기업인협의회와 협의후 지원	9. 변경없음